

당리2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 
정비계획(안)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 
**검 토 보 고 서**

**1. 제안이유**

- 본 구역은 대부분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, 불량주택 밀집지로서 부산광역시 기본 계획상 주택재개발 구역으로 선정되었으며
- 이에 주택재개발을 통한 노후, 불량 건축물의 개량 등으로 쾌적한 주거 환경개선을 위하여 정비 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함

**2. 관련 법령**

-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 
(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)

**3. 정비계획 결정(안)개요**

- 위 치 : 사하구 당리동 340번지 일원
- 면 적 : 22,128㎡(6,693평)
- 용도지역/지구 : 준주거지구, 제3종일반주거지역  
최저고도 6M지구
- 신청자 : 당리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  
추진위원회

## 4. 검토의견

### ■본 의견 청취의 건은

- 건축년도가 20년이상 경과한 노후, 불량주택이 밀집한 부산 사하구 당리동 340번지 일원의 주택재개발구역에 대하여
- 열악한 주거환경을 현대감각에 맞게 취락구조를 개선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
- 쾌적하고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인간의 생애적이고 토속적인 기본 욕구를 충족시켜 당해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소코자 하는 필요 충분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며
- 특히 주택재개발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명시 되어있고 2005. 9. 21. 부산시고시 제 2005-267호에 의거 부산광역시 재개발기본계획에 지정고시 되어 있으며 안녕과 행복을 추구하는 헌법정신에 부합되므로

### ■ 위 의견 청취의 건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됨

따라서 당리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정비구역으로 지정함이 가하다고 사료됨